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84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신영대·김윤덕·한병도

김승원 · 민형배 · 이병훈

송갑석 • 이장섭 • 유정주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한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3(설계·감리용역사업의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 2. 「건축법」,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 협력 및 협조관계가 명확히 규정된 사업
 - ② 발주자는 예산 편성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리발 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행 개 아 혂 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등) ① -----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 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 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이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설계·감리용역사업의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동일 구 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 과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전력

 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

 역
- 2. 「건축법」,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업무 협력
 및 협조관계가 명확히 규정된
 사업
- ② 발주자는 예산 편성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